포항시 직장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포항시북구청어린이집)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년 10월 2일 / 포항시장

나. 회부일자 : 2026년 10월 7일

다. 상정일자

❍ 제33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2026. 10. 15.) 상정 . 질의답변 . 토론 .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공은정 여성가족과장)

가. 동의를구하는 사항

○ 포항시 북구 동빈1가 소재 포항시북구청어린이집의 민간위탁기간의 만료로 기존 운영체에 대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적정성 심사』, 『운영성과평가』 실시 후 운영실적, 공신력, 전문성 등을 고려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일정 기준 이상의 점수로 재위탁자를 선정하는 것에 대한 심의 결정으로,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제안사유

○『영유아보육법』 제24조,『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수탁자의 운영실적, 공신력, 재정능력, 전문성, 운영성과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한 재위탁 결정에 대한 심의로, 직장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다. 제안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포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2조~제9조,제4조(민간위탁사무의기준)

○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22조(위탁운영) 및 제23조(위탁계약)

○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Ⅰ.어린이집의 설치 (직장어린이집)

3.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현황

어린이집명	위 치	원장	정원	현재위탁기간	비고
포항시북구청 어린이집	포항시 북구 삼호로 36	이선희	80명	2022.01.01.~2026.12.31.	

나. 재위탁 계획

○ 위탁기간 : 5년

○ 위탁구분 : 재위탁

○ 소요예산 : 5년간 연도별 비용추계

구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비고
소요예산 (천원)	1,331,024	1,388,955	1,449,782	1,513,651	1,580,712	

※ 보육교직원 인건비, 운영비, 보육료, 각종 수당 등 포함

○ 위탁사무의 내용

위탁사무	내 용	비 고
어린이집 운영전반	-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관리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의한 취약보육(장애,야간,영아,다문화) - 입소한 영·유아의 교육 및 영양, 건강, 안전관리 - 연간 보육계획서 수립 시행 - 어린이집 종사자, 이용아동,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 보육교직원의 고용(승계), 복무, 후생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 : 위탁신청 서류에 근거한 운영계획 및 운영실적 등 평가
- 2차 PPT 소견발표 : 전문성 및 운영능력 평가(보육정책위원회 의결)

○ 심사내용 : 운영 및 사업실적, 운영체(원장)의 전문성, 운영계획, 공신력, 재정능력 등

○ 선정방법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및 2026년 보육사업안내『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 심사 기준표』준용

  ※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합산 제외

- 포항시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 8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변경위탁(공개모집) 추진

○ 심사항목 및 배점

심 사 항 목	항목별점수
1. 어린이집 운영계획	25
2.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30
3. 운영체의 운영실적	30
4. 운영체의 공신력	10
5. 운영체의 재정능력	5
합 계	100

다. 민간위탁기간 : 5년(2027. 1. 1. ~ 2031. 12. 31.)

라.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비용추계서 붙임

마. 추진절차

- 2026. 10월 의회 동의
- 2026. 11월 재위탁 어린이집 위·수탁 계약 체결

4.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가.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총무새마을과 - 20596(2026. 5. 27.))

의안 번호	심의대상	심의 결과	평균 점수	비 고
2026-14호	포항시북구청어린이집(원장 이선희)	적정	90.3점	

나. 검토의견

검토항목	검 토 내 용
1.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 가능성	보육교직원 채용, 보육 프로그램 구성, 학부모 관리 및 어린이집 시설 관리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 업무를 위탁 운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를 공개경쟁을 통해 채용하고 평가받도록 하는 민간위탁 운영이 효율적
2.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22조(위탁운영) 등의 관련 법령 및 규정, 지침 등에 의해 운영 되므로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3.경제적 효율성	기존 확보된 인력 및 보육프로그램 관련 콘텐츠 활용으로 경제적 효율성 극대화
4.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채용함으로써 전문적인 위탁운영 가능
5.성과 측정의 용이성	영유아보육법 제30조(어린이집 평가)에 의거 어린이집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대한 성과 측정가능
6.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법령·지침 및 위·수탁 협약에 의거 업무 수행에 대한 지도 ·감독을 통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7.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공교육 증대 국가정책과 저출산으로 인한 민간서비스 공급위축에 대한 보완적 측면에서도 민간전문가에게 운영의 기회를 제공하는 민간위탁 운영이 바람직함

5. 어린이집 운영 성과 평가 추진

가. 평가기관 : 외부 전문가에 의한 평가

나. 평가기간 : 2026. 7. ~ 8.

다. 평가방법 : 서면평가, 현장평가, 운영성과지표 평가 등

라. 평가결과 : 우수 92.03점/100점

마. 평가요약 : 성과평가 결과 '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없이 관련 법령 및 운영 기준을 전반적으로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바. 고시공고 : 포항시 공고 제2026-2264호(2026. 9. 4.)

6. 포항시 보육정책위원회

가. 심의일자 : 26. 9. 8.(화) 16:00

나. 심의위원 : 포항시 보육정책위원 15명 중 9명 참석(제척 1명)

다. 심의안건 : 포항시 직장어린이집 재위탁 심사

라. 심의내용 : 운영계획, 전문성, 운영실적, 공신력 및 재정능력 등 종합평가

마. 심의결과 :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재위탁 가결"

7.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장준호)

○ 본 동의안은 포항시북구청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의 민간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기존 운영체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어린이집 운영을 재위탁하기 위해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 '포항시북구청어린이집'의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관리 전반을 위탁하여 80명 정원의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취약보육(장애, 야간, 영아, 다문화) 실시, 입소 영·유아의 교육·영양·건강·안전 관리, 보육교직원의 고용(승계) 및 복무 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음.

○ 다음으로, 위탁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영유아보육법」 제24조, 「포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22조 및 제23조 등에 의거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한 위탁 근거는 마련되어 있어, 법적 측면에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검토결과**, 법령 및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의 근거와 절차에 부합하며, 기존 확보된 인력 및 보육프로그램 관련 콘텐츠 활용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 극대화 및 공공성 확보 등 운영의 적정성 또한 타당하여 본 동의안을 동의하는 데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성과 평가 결과 우수한 점수(92.03점)를 기록하며 제반 법령을 성실히 준수해 온 기존 수탁자의 전문성이 입증된 만큼, 재위탁 이후에도 양질의 보육 프로그램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원아와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모범적인 직장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임

8. 질의 및 답변의 요지 : 생 략

9. 토론의 요지 : 없 음

10. 심사결과 : 원안가결